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총리령 제1774호, 2021. 12. 30.,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을 제1780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절차,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방법,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등(안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3조의2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신청서에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 휴게·일반음식점영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 운영과 관련된 영업등록과 영업신고의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나.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안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는 직무 수행 내용 및 결과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며,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함.

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안 별표 14 및 별표 17)

1)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는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함.

2)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제조·가공·소분·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보관하도록 함.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23)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7일, 2차 위반 시 15일, 3차 이상 위반 시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일, 2차 위반시 10일, 3차 이상 위반 시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77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제43조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영업등록신청서"로,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1. 공통서류
    -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 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구분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서"로,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1)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1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교육"을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교육내용"을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9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3호까지 및 제9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을 "제7호까지의"로 한다.

제55조,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 신고)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에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영업소에 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를 해임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49호의2서식의 위생관리책임자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내용·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각각 3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제9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시간: 2022년 1월 1일
3. 제57조 및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2020년 1월 1일

별표 14 제1호자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5호가목4)의 제목 외의 부분을 가)로 하고, 같은 목 4)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을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0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14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공유주방 운영업의 시설기준

##### 가. 건물의 위치 등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용도 외에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 4)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작업장 등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작업장은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작업장, 조리장은 제8호가목1)·2)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다. 식품취급시설 등

- 1)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해야 한다.
- 2)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은 모든 공유시설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
- 3)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식품취급시설 등은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라. 급수시설

- 1)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 3)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 마. 화장실

화장실은 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바. 창고 등의 시설

영업자별로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구분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한다. 다만, 영업자별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창고를 대신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사. 검사실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의 검사실은 제1호사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공유주방의 작업장을 사용하는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의 분리, 구획 또는 구분 없이 작업장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7 제1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자.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별표 17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7호에 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식품소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모.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별표 17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식품의 제조·가공·소분·조리 등의 과정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가공·소분·조리시설 및 기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영업등록증 및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해 기록하고, 그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별표 23 II 제1호 중 "식품조사처리업 및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을 말한다"를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한다.

별표 23 II 제1호의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5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별표 23 II 제1호의 표 제1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0 일	영업정지 1 5일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별지 제3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제출서류란 제1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준비증명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p>1. 공통서류</p> <p>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p> <p>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p> <p>1)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p> <p>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p> <p>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p> <p>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p> <p>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p> <p>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p>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별지 제4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3호서식]

( )영업허가(신고·등록) 관리대장

(제 1쪽)

1.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업 소 명			계 인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영업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영업허가(신고·등록)조건				
식품등의 유형 (운반업은 차량번호)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명 및 소재지(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2.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변경허가(신고·등록)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성명

210mm x 297mm [보존용지(1종)80g/m²]

(제2쪽)

3. 업소규모

공장 및 영업장 규모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작업장 면적(제조, 가공장 등)		소 계 ㎡	
종업원수	총 원		명	
	본 사		명	
	공장 및 영업장	사 무 직		명
		판 매 직		명
생 산 직			명	
건 물 소 유 구 분	자가·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			

4.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사항(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성 명	생년월일	자 격	직 책

5. 기타 행정조치 사항

연 월 일	구 분	조 치 내 용	기재자 직·성명



(제 3 쪽)

6. 행정처분사항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재자 직·성명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구분	지정번호	지정일자	주된 취급음식명	영업장 배치도											
㉑ 권통업소															
㉒ 모범업소															
㉓ 문계업소	1. 변태·퇴폐 2. 청소년유해 3. 변태·퇴폐 + 청소년유해		위 반 소 지 (문제요인)												
	1.	2.	3.												
㉔ 건물구조	1. 목조 2. 벽돌조 3. 부력조 4.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1. 지상 층, 2. 지하 층) 건평 $m^2$														
시 설 현 황	㉕ 영업장면적	내용		변경 사항											
		조리장	$m^2$	연월일인											
		격실	$m^2$												
		격석	건물 내부 장소 [ $m^2$ ] 건물 외부 장소 [ $m^2$ ]												
		탈의실	$m^2$												
		무도장	$m^2$												
		기타	$m^2$												
	계	$m^2$													
	㉖ 급수시설	1. 상수도전용 2. 지하수전용 3. 상수도(음용) + 지하수(주방용)겸용													
	㉗ 화장실 사용 및 면적	업소내( ) $m^2$ 타업소공동( ) $m^2$		제작성사유											
㉘ 조리사	성명	면허번호	면허청	작성연월일											
㉙ 공유주방 사용업소	공유주방 운영업소명		공유주방 소재지												
㉚ 참고사항	작성 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수정번호	수정일자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신고안내,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증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 ] 축색판매제조·가공업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식품운반업 [ ] 기타식품판매업 [ ] 위탁급식영업 영업의 [ ] 식품소분업 [ ] 식품냉동·냉장업 [ ] 제과점영업 종류 [ ] 식용얼음판매업 [ ] 용기·포장지제조업 [ ] 식품자동차판매기영업 [ ] 용기류제조업 [ ] 유통전문판매업 [ ] 휴게음식점영업			
	영업장의 면적: 건물 내부 장소 [ m <sup>2</sup> ] 건물 외부 장소 [ m <sup>2</sup> ] 영업장의 소재지:			
	※ 건물 외부 장소의 면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음식점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을 해당 음식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와 함께 건물 내부 장소에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안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축색판매제조·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업 4. 식용얼음판매업 5. 식품자동차판매기영업 6. 유통전문판매업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 기타식품판매업 9. 식품냉동·냉장업 10. 용기·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용기류제조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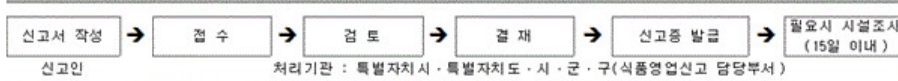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육외광고등 동물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거정책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10mm × 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위쪽)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입만 해당합니다)</li> <li>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유입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행)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용 민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용 민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9.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1.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14.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p>수수료</p> <p>28,000원</p> <p>(수입인자 또는 수입증지)</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li> <li>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li> <li>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안전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관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5.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7.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ol>	

처리절차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m <sup>2</sup>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ol>	수수료 2만8천원 (수업인지 또는 수입인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이용계획확인서</li> <li>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li> <li>「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준비증명서(「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li> <li>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li> </ol>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육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육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관경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9호의2 서식]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명	영업등록번호 제 호		
소재지			

위생관리 책임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선임경력	※ 근무 경력이 있는 업소명, 영업등록번호만 적습니다.
	해임	성명	
		생년월일	
		자격	
		직명	
일자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명서류 1부(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종글지(80g/m<sup>2</sup>)]

(뒤쪽)

### 선임·해임 안내

1.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나. 「고등교육법」 제22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신제조학·농신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기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영양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나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생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처리절차

